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예고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6. 10.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2조)
- 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신청, 지원중지, 환수조치 등(안 제6~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0 ~ 6. 15(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6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유형	소득 기준	본인부담금 지원율(균비)	비 고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이용 시	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	50%	
	나		50%	
	다		50%	
	라		50%	
다자녀	-	-	100%	

※ 다자녀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적용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	취업 ☐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 귀 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